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24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 고 B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을

담당변호사 이호철,최성호

변론 종결 2021. 1. 13

판결 선고 2021.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96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6. 3. 24.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벤츠 승용차 1대(취득원가 309, 986, 548원)에 관하여 보증금 101, 850, 000원, 리스료 월 5,490,700원(첫 회에 한하여 5,126,650원), 납입일 매월 15일,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원고에 대하여 소 외 회사의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분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연체 리스료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2020. 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았고, 정산 결과 2020. 9. 22.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연체 이자, 연체료, 자동차세, 정산 부대비용 합계 24,360,182원의 해지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C는 2016 . 10. 7.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교회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6.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조금씩 연체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C의 위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 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고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 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 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 정들, 즉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년 6개월가량 월 리스료를 정상 적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 12.에야 비로소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월 리스료를 연체한 이 후에도 즉시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않다가, 2020.

3.경에야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점,원고는 월 리스료 채권이 매월 발생함을 들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C에 대한 정산금채권으로,위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2020. 3.경 비로소 발생하였고,위 정산금채권 내역에 월 리스료 채권의 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사건 리스계약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금까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남세진

별지